

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안내

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도교육청 **임용시험 일정(안)**과 **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(출제범위), 운전직렬 변경사항**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험별·직렬(직류)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『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는 2021년 3월 중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be.go.kr> ⇒교육소식⇒시험/채용/구직 ⇒지방공무원시험)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

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,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『**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**』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

시험 공고	원서접수	시 험 일 정			
		필기시험	인적성검사	면접시험	합격자발표
3월 초	4월 초	6.5.(토)	7월 중	7월 중	8월 중

※ 문의할 곳: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☎ 063-239-3489, 3497, 3495

※ 상기 시험일정은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니, 『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2021년도 제1회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출제과목 안내

시험명	직 급	직 렬 (직 류)	시 험 과 목(출제범위) (1·2 차 병합시험)
경력 경쟁 임용 시험	9급	공 업 (일반기계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기계일반 기계설계(2015 교육과정상 '기계제도' 교과에서 출제)
		공 업 (일반전기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전기이론, 전기기기
		시 설 (일반토목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응용역학개론(2015 교육과정상 '토목일반' 교과에서 출제) 측 량(2009 교육과정상 '측량' 교과 이론 출제 가능)
		시 설 (건 축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건축계획, 건축구조

※ 상기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(출제범위)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로써, 일부 직렬(직류)의 시험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실제 선발 직렬(직류)은 반드시 『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경력경쟁임용시험(운전직렬) 시기 및 자격요건 변경

구분	당초	변경
시험시기	2021년 10월 예정	<u>2021. 6. 5.(토)</u>
자격요건	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	<u>대형버스 운전경력 6개월 이상</u>

※ 상기 내용은 2021년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, 2022년도부터는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으로 적용합니다.

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

연구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 과목: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

○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
		일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	IBT 71점 이상	-
토익(TOEIC)	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 (TEPS)	(2018. 5.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	(2018. 5.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	Level 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연구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: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

○ 기준점수(등급)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 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.

※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을 준용하여 5년으로 연장